KPX 전력거래소

일반관리1800 안전보건관리규정

2019. 11. 18 제정
2020. 6. 16 부분개정(1차)
2021. 12. 16 부분개정(2차)
2024. 08. 00 부분개정(3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8. 0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거래소 임직원, 시설, 수급인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 발주공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단, 중처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관련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1. 12. 16, 개정 2024. 08. 00.>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시설법(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거래소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련 개별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1. 12. 16.>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6, 개정 2024. 08. 00.>
2.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 및 협력사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정신 및 육체노동)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6.>
3. "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6.>
4.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산안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 <개정 2024. 08. 00.>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다. 거래소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현장
5.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중대재해"란 산안법, 중처법에서 정하는 사고 중 다음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6의2. 산안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개정 2024. 08. 00.>

6의3. 중처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가. “중대산업재해”란 「산안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나.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개정 2024. 08. 00.>

7.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8.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9.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0.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신설 2021. 12. 16.>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건설안전기본법」제2조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신설 2021. 12. 16.>
12. “고위험 작업”이란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작업을 말한다. <신설 2021. 12. 16.>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지침”이라 한다.)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16.>

제4조(준수의무)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임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임직원에게 제공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② 임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제5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거래소가 도급인에 해당되는 사업을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거래소에서 작업할 경우 거래소의 임직원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
5.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7.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거래소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개정 2021. 12. 16.>

제2장 안전관리 체계

제6조(안전·보건관계자 임명 등) 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정’은 이사장, ‘부’는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선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본사 각 처·실장, 지사장 및 제주본부장으로 하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지정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 주관팀의 산업안전 담당자, 보건관리자는 산업보건 주관팀의

산업보건 담당자로 하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지정하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행자는 각 팀의 장으로 하고 관리감독자가 지정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안전보건수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직책이 공석일 경우, 차하위자를 안전·보건관계자로 임명한다.

⑥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전·보건관계자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8. 00.>

제7조(안전·보건 관리조직 직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정)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정) 부재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08. 00.>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정)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정) 부재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부)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08. 00.>

1.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중대재해 발생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4.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도급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③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에서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단,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안전보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2. 관리감독자를 보좌하여 소속 부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개정 2021. 12. 16, 개정 2024. 08. 00.>

제8조(안전보건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설치·운영) 거래소는 안전보건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여 안전보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거래소는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침을 따른다.
2. 거래소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경영위원회 운영 지침을 따른다.
3. 거래소는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수급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산업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안전근로협의체 운영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1. 12. 16, 개정 2024. 08. 00.>

제9조 삭제 <2021. 12. 16.>

제10조 삭제 <2021. 12. 16.>

제11조(회의록 작성·보존) 거래소는 제8조에 따라 위원회 및 협의체를 개최한 경우 각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제12조(회의 결과 등의 주지) 거래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2. 16, 개정 2024. 08. 00.>

1. 사내 방송
2. 사내 공문
3. 게시판 게시
4. 자체 정례조회
5.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1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거래소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자체점검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별표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안전보건규칙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8.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9. 중량물의 취급작업

② 제14조의2에 따른 작업지휘자는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08. 00.>

제14조의2(작업지휘자) 거래소는 제14조제1항제2호·제6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제14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08. 00.>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교육의 구분) ①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 및 책임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08. 00.>

② 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거래소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교육대상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08. 00.>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그 밖에 교육의 구분,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5를 준용하여 수립한 연간 안전 종합교육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 12. 16.>

제16조(책임) ① 전 직원은 교육대상에 따라 해당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계획된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담당자는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자 정기교육) 거래소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연간 안전 종합교육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 12. 16, 개정 2024. 08. 00.>

제18조(관리감독자 교육) 거래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연간 안전 종합교육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 12. 16.>

제19조(채용시 교육) 거래소는 직원를 채용하였을 경우 작업 배치 전 해당 업무 또는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내용은 연간 안전 종합교육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1. 12. 16, 개정 2024. 08. 00.>

제20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거래소는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배치 전 해당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교육강사) 사내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관리감독자로서 제18조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5.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6.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2조(교육방법) 사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집체교육 : 교육장 또는 강당 등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 제외) 에서 실시하는 교육
2. 현장교육 : 거래소 내 기계·기구, 설비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3. 인터넷 원격교육 : 전산망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4. 위탁교육 :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제23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거래소에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직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08. 00.>

제24조(교육주기 등) 제23조에 따른 직무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에 관한 신규교육을 받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마다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교육계획의 수립) 안전관리 전담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관계 서류 보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결과에 대한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7조(면제)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거래소 자체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제4장 안전관리

제28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거래소는 매년 12월말까지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경영책임계획(이하 “책임계획”이라 한다.)을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8. 00.>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중점기관이 아닐 경우, 제외) <개정 2021. 12. 16.>
4. 안전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5.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거래소는 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기본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④ 제1항에 따른 확정된 책임계획은 전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하여 전 직원이 안전관리 업무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제28조의2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거래소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보건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기재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별표1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8. 00.>

② 거래소는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12. 16.],

제29조(안전작업허가) ①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부서 또는 근로자는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 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안전보건 전담부서에서 지도·조언을 하여야 한다.

② 안전작업허가 대상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은 안전작업허가 지침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21. 12. 16.>]

[종전 제29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12. 16.>]

제30조(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방호조치 등) ① 법에 의한 유해·위험기구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각 팀장은 제1항의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사용할 시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에 합격한 장비만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 및 관련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은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제31조(안전인증) ①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를 구입·사용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인증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경우
3.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32조(안전검사) ① 거래소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을 취급할 경우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은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제33조(안전수칙) ① 거래소 내 작업간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일반 안전수칙과 특별 안전수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 안전수칙은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별 안전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용접작업장, 비상발전기실,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 등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관리감독자 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8. 00.>

④ 안전수칙은 해당 작업 및 장소에 게시하여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직원은 이를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거래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당일 업무에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 하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근로자 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35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 1호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근로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5조 제2항, 제36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08. 00.>

제36조(작업중지 요청제) 거래소는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상시적으로 신고·제안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요청제(Safety-Call)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 기준은 '작업중지 요청 및 근로자 위험 신고 제도 운영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4. 08. 00.>

제37조(안전·보건표지) ① 거래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다. <개정 2024. 08. 00.>

제38조(안전제안) ① 거래소 전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항상 연구하고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 직원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내부제안 제도 등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안전투자)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 안전관리 및 그와 관련되는 예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제40조(안전기술 개발 등) ① 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활동 등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위험성평가) ① 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관계수급인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개정 2024. 08. 00.>

③ 정기 위험성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 점검 및 조치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8. 00.>

④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 할 수 있다.

⑤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방법, 절차 및 감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위험성평가 및 관리 프로세스」에 따른다.

제5장 보건관리

제42조(건강진단의 구분 등) ① 거래소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직원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③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건강진단 결과조치에 관한사항은 「복리후생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3조(유해물질 취급) ① 거래소는「안전보건규칙 별표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을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동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4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 ①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게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부착해야 한다.

②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③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1. 12. 16.>

제45조(보호구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거래소는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보호구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6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거래소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직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거래소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거래소는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거래소는 법 제129조부터 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행규칙 제221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2. 16, 개정 2024. 08. 00.>

제48조(보건수칙) 보건수칙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수칙”은 “보건수칙”으로 본다. <개정 2021. 12. 16.>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49조(비상연락망)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0조(산업재해 처리절차)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작업 소관 부서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일 주간에는 안전관리총괄 부서장을 경유하고,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계통을 통하여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2. 재해 유발자 또는 사고자(피해자) 인적사항
3. 재해 발생원인 및 과정
4. 재해조치 및 전망
5. 기타 재해와 관련되는 주요사항

제51조(긴급조치)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해당 작업 소관 부서장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 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치료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규명 및 복구대책, 재발방지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활동

제52조(산업재해 조사 및 보고) ①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은 연쇄사고 등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에도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해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소관 부서장은 안전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에 재발방지 계획을 포함한 사고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안전관리총괄 부서장을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⑤ 그 밖의 사항은 「사고조사 및 시정조치 프로세스」에 따른다.

<개정 2024. 08. 00.>

제53조(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4. 재해발생 재발방지 계획

제54조(산업재해 분석 및 대책) ① 안전관리 전담부서는 12월말까지 발생한 재해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당해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해분석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직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7장 건설공사 안전관리

제55조(계획단계의 안전관리) ① 거래소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건설공사에 설치·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기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감소방안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

<개정 2024. 08. 00.>

② 거래소는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12. 16.>], [종전 제55조는 제58조로 이동 <2021. 12. 16.>]

제56조(설계단계의 안전관리) 설계자는 거래소가 제공한 기본안전보건대장, 해당사업의 유해위험요인 정보 등에 근거하여 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12. 16.], [종전 제56조는 제59조로 이동 <2021. 12. 16.>]

제57조(시공단계의 안전관리) ① 시공자는 거래소가 제공한 설계안전보건대장 등에 근거하여 법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할 경우,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시행령 별표2, 3, 5, 9 등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법 제2장 제1절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거래소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되며,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본조 신설 <2021. 12. 16.>]

제8장 상 벌

제58조(포상 및 평가우대) 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하여 안전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②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안전관리 제안이 채택된 우수 직원
2. 안전관리 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직원 또는 부서

③ 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59조(징계) ① 거래소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본인의 고의, 중대한 과실, 태만에 의한 경우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② 징계 요구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거래소에 손해를 끼친 자

제9장 보 칙

제60조(규정의 주지) 이 규정을 개정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소 임직원, 수급인 근로자 등 안전보건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정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공문
2. 사내 게시판 및 인트라넷
3. 교육
4.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신설 2021. 12. 16.>, [종전 제61조는 제60조로 이동 <2021. 12. 16.>]

제61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부 칙

이 규정은 2019. 11. 18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6)

이 규정은 2020. 06.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16)

이 규정은 2021. 12. 16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안전보건경영책임보고서 포함 내용

I. 전년도 기본현황

1.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작업장 (보안상 공개가 불가한 경우 제외)
2.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실적 (중점기관이 아닐 경우 제외)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현황 및 역할
4. 안전 예산 현황
5. 위험성평가 이행·추진 현황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II. 전년도 실적 및 평가

1. 안전경영방침 및 활동·실적
2. 주무부처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3.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4. 대국민 안전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실적

III. 당해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

<신설 2021. 12. 16.>]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2. 16.>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62조에 의거, 전력거래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선임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사항	○ 도급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중대재해 발생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20　년 00월 00일

이 사 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16.>

관리감독자 지정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의거, 전력거래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직무

- ㅇ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ㅇ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ㅇ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ㅇ 해당작업에서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ㅇ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ㅇ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 ㅇ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년 00월 00일

이 사 장　　ㅇ　ㅇ　ㅇ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2. 16.>

안전관리자 지정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력거래소의 안전관리자로 지정합니다.

※ 안전관리자의 직무

-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ㅇ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ㅇ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ㅇ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ㅇ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ㅇ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ㅇ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ㅇ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ㅇ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ㅇ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0　년 00월 00일

이 사 장　　ㅇ　ㅇ　ㅇ (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12. 16.>

보건관리자 지정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력거래소의 보건관리자로 지정합니다.

※ 보건관리자의 직무

-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ㅇ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ㅇ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ㅇ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ㅇ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ㅇ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단,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ㅇ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ㅇ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 ㅇ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ㅇ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ㅇ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ㅇ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ㅇ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0　년 00월 00일

이 사 장　　ㅇ　ㅇ　ㅇ　(인)

[별지 제5호서식]

안전보건수행자 지정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전력거래소 OOOO(실/원/센터/본부/지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보건수행자로 지정합니다.

※ 안전보건수행자 업무 내용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관리감독자를 보좌하여 소속 부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20　년 00월 00일

관 리 감 독 자　　O O O　(인)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1. 12. 16.>